

# 意匠實務(1)

## 類似意匠登錄

### I. 意義

意匠法 第6條 第1項에 「意匠權者 또는 意匠登録出願人은 自己의 登錄意匠이나 意匠登録出願한 意匠에 반類似한 意匠에 對하여는 類似意匠으로서 意匠登録을 받을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와 같이 類似意匠制度는 他人의 意匠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意匠登録要件인 新規性과 創作性에 아무런 흡결이 없으나 自己의 意匠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新規性이 약하고 따라서 創作性도 낮은 意匠을 自己의 登錄意匠의 類似意匠으로 登錄하는 制度인 것이다.

### 가. 存在理由

意匠權은 工業所有權中에서도 그 權利保護가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意匠은 物品의 外觀으로 模倣이 容易하고 流行性이 強함으로生命力이一般的으로 짧으며 또한 權利範圍의 確認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善意의 模倣者도 나오기 쉽고, 意識的으로 模倣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一旦 權利가 侵害되면 그 救濟에 많은 時間과 經費가 所要되어 意匠登録의 存在理由를喪失하게 된다. 그러므로 登錄된 意匠權의 侵害을 警防하고, 侵害로부터 救濟를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그 權利範圍를 明確하게 하여 公開하여 둘必要가 있다.

적어도 類似意匠으로 登錄된範圍內에서는 權利가明確하기 때문에, 이 權利가 侵害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救濟手段을 講究할 수 있다. 이것이 類似意匠制度의 存在理由이며 工業所有權制度中 意匠에만 있는 特有의制度이다.

이러한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基本意匠의 意匠權과

合體되어 基本意匠과 主從關係를 이루는點에서 單純히 聯合關係에 그치고 主從關係가 아닌 獨自의인 權利를 갖는 聯合商標制度와 다르다.

### 나. 確認說, 擴張說, 結果擴張說

類似意匠制度는 主로 登錄된 類似意匠의 意匠權의 効力에 관한 見解를 中心으로 確認說과 擴張說 또는 結果擴張說等이 있다.

#### (1) 確認說

類似意匠制度의 目的是 登錄意匠의 周邊(類似範圍)에 觀念的으로 存在하는 權利範圍내에 類似意匠登録을 함으로서 登錄意匠의 權利範圍를 具體的으로 明示, 顯在化하여 그 權利範圍를 明確히 해두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類似意匠의 登錄要件도 一般意匠과는 다른 類似意匠의 權利範圍는 基本意匠의 權利範圍를 超過하지 않는다는 見解이다.

#### (2) 擴張說

類似意匠은 意匠의 하나로서 意匠登録要件에 있어서 新規性判斷에 基本意匠과의 關係를除外하고는 一般意匠과 何等의 差異가 없다고 보고 따라서一旦 登錄된 意匠은 그 効力에 있어서도 一般登錄意匠과 달리 바 없이 그에 類似한範圍까지 効力이 미치므로 基本意匠을 基準으로 보면, 基本意匠의 權利範圍가 그만큼 擴大된 것이라고 보는 見解이다.

#### (3) 結果擴張說

類似意匠登録을 하면 그 類似意匠의 類似의 幅까지 權利範圍가 넓어지는 것을 認定하되 이것은 基本意匠의 權利의 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基本意匠의 權利範圍의 幅을 넘어서 類似意匠의 權利範圍의 幅이 있을뿐



安文煥  
<特許廳 調査課長>

## 論壇解説

### ■ 이달의 目次 ■

#### I. 意義

#### III. 登錄要件

<계속>

이라는見解이다.

어떻든類似意匠登錄을 하면意匠登錄權者는結果的으로基本意匠과類似意匠을 合쳐서보다넓은權利를確保할수있는것이事實이다.

그리고類似意匠制度의趣旨를中心으로생각하면確認說이妥當하나法規定에充實하고結果를重要視하면擴張說내지結果擴張說이妥當하다고보는것이一般的의見解이다.

参考로日本에서의類似意匠制度의發達過程을살펴보면大正10年法까지는意匠權의效力範圍가그登錄意匠에관한物品에限하도록規定되었고, 소위禁止權만이類似意匠에까지미치게되어있었다.禁止權이란意匠權者が獨占排他的으로實施할수있는權利가아니고他人이當該登錄意匠에類似한意匠을無斷히implementation하였을경우,政府로부터處罰을받는것에不過한것이었다.

그리므로類似意匠을登錄함으로서basic意匠의權利範圍을類似意匠에까지擴大시키게된것이며, 이것이本來의擴張說이었다.

그러나現行日本意匠法에서는登錄意匠및이에類似한意匠까지를獨占implementation權의範圍로規定하고있으므로本來의擴張說은그論理의基盤을잃어버리게되었다.여기서類似意匠의登錄에의하여basic意匠의權利의範圍을確認한다는確認說이有力視되었고, 또한새로운見解는類似意匠의登錄에의하여basic意匠의權利範圍을超過하는部分이發生하는것을認定하고, 그超過하는部分은basic意匠의權利範圍가아닌類似意匠獨自의效力範圍로認定하는result擴張說이나오게된것이다.類似意匠登錄의法의效果로서basic意匠의權利範圍을超過하는部分을類似意匠의獨自의權利範圍로認定하는것은當然한것으로取扱되고있으므로類似意匠登錄의結果만을重視하면result擴張說이

相當한見解이다.

日本意匠法의關聯條文變遷過程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大正10年意匠法〉

第八條：意匠權은登錄에의하여發生한다.

意匠權者は그登錄意匠에관한物品을業으로製作,使用,販賣 또는擴布할權利를獨占한다. (以下省略)

第26條：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자는3年以下의懲役 또는三千円以下의罰金에處한다.

1.他人의登錄意匠과同一物品을業으로製作,使用,販賣 또는擴布하는者.

2.他人의登錄意匠과類似한物品을業으로製作,使用,販賣 또는擴布하는者(以下省略)

#### 〈現行日本意匠法〉

第23條：意匠權者は業으로서登錄意匠및그에類似한意匠을implementation할權利를獨占한다. (以下省略)

第38條：登錄意匠또는이에類似한意匠에관한物品의製造에만使用하는物品을業으로서製造,讓渡,貸與하거나이를위하여展示 또는輸入하는行為는當該意匠權또는專用implementation權을侵害한것으로본다.

以上에서살펴본바와같이日本意匠法에서는意匠權의權利範圍을大正10年法까지는登錄된意匠에限하면서 것을現行法에서는登錄된意匠과이에類似한意匠까지도擴大改正함으로서登錄意匠의保護에결합이없도록補完하였다.

우리나라의意匠法은第19條에서「意匠權者は登錄意匠으로된物品을業으로서生產,使用,販賣,輸入 또는擴布할權利를獨占한다」고되어있고,또한第31條에서「登錄意匠에關聯한物品의生產에만使用하는物品을業으로서生產,使用,販賣,輸入 또는擴布하는行為는當該意匠權또는專用implementation權을侵害한것으로본다」고規定되어있으므로法을物理적으로解

釋하면 登錄된 意匠(넓게 보아 同一性)이 認定되는 意匠)만이 意匠權의 範圍에 들어가고, 類似한 意匠은 意匠權者의 權利範圍가 아니며 또한 他人에게 禁止된 行爲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意匠登錄으로 因하여 公知意匠이 됨으로서 이에 類似한 意匠은 「公知意匠에 類似한 意匠」이 되어 意匠法 第5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은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이 된다고 解釋될 수도 있다.

이렇게 假定하고 보면 類似意匠制度가 「觀念의 으로 存在하는 基本意匠의 權利範圍가 어디까지인가를 確認, 顯在化시키는데 있다」는 確認說의 存立 餘地가 없어진다. 筆者의 私見으로서는 意匠制度의 特性으로 보아 登錄意匠에 類似한 意匠을 權利로서 保護하여 주어야 한다고 볼 때, 또한 實際의 으로 現在 特許廳에서는 意匠權의 權利範圍를 類似한 意匠까지로 認定하고 있음을 考慮할 때 現行 意匠法 第19條와 第31條를 改正하여 登錄意匠 및 이와 類似한 意匠을 意匠權者의 權利範圍로 明示하여 두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 II. 登錄要件

### 가. 基本意匠의 登錄이 存在하여야 한다

類似意匠이란 基本意匠에 對應되는 概念이므로 類似意匠을 登錄하려면 基本意匠의 登錄이 存在하여야 한다. 基本意匠의 登錄이 存在한다는 것은 普通으로는 基本意匠으로 할 수 있는 意匠이 이미 登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로는 基本意匠이 出願中에 있거나 또는 類似意匠과 同時に 出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類似意匠登錄 出願時에 基本意匠이 登錄되어 있으느냐與否에 따라

(가) 基本意匠이 登錄되어 있는 경우에는 類似意匠登錄 出願書의 「基本意匠의 表示欄」에 그 基本意匠의 登錄番號를 記載하면 되고,

(나) 基本意匠이 出願中에 있는 경우에는 그 出願番號를 類似意匠登錄 出願書의 「基本意匠 表示欄」에 記入하고,

(다) 類似意匠과 基本意匠이 同日字에 出願될 경우에는 각 意匠의 出願書에 (가), (나)等의 識別符號를 부여して 區分하고, 類似意匠登錄 出願書의 「基本意匠의 表示欄」에 「同日字 意匠登錄出願 (가)號」等으로 記入

하면 된다.

類似意匠의 登錄은 基本意匠의 存在를前提로 함으로 類似意匠과 基本意匠이 同時に 出願되는 경우라도 基本意匠의 出願番號가 類似意匠의 出願番號보다 빠른 것이 論理에 合當하다.

### 나. 自己의 登錄意匠에만

#### 類似한 意匠이어야 한다

意匠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하면 「意匠權者 또는 意匠登錄 出願者는 自己의 登錄意匠이나 意匠登錄出願한 意匠에만 類似한 意匠에 對하여 類似意匠登錄으로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여기에서 「自己의 登錄意匠이나 意匠登錄出願한 意匠에만 類似한 意匠……」이란 어떤 것인가. ① 自己의 登錄意匠에만 類似하고 다른 어떤 意匠에도 類似하여서는 아니되는가, 또는 ② 自己의 登錄意匠에 類似하고 他人의 登錄意匠이나 他人의 先願意匠에도 類似한 意匠은 어떠한가, 그리고 ③ 自己의 登錄意匠에 類似하고 他人의 意匠에는 類似하지 않지만 自己의 다른 登錄意匠이나 公知意匠에 類似하면 어떠한가 하는 것 等에 對한 問題가 있다. 이 問題는 類似意匠登錄制度의 本質과도 關聯되어 매우 어려운 問題이며 여러 가지 說이 나누어져 있다.

참고로 日本 意匠法에서의 發達過程을 보면 舊法體制에서는 類似意匠이라는 獨立된 概念으로 把握整理된 것이 아니고 新規性의 概念으로 把握되었다. 即 大正10年法 第3條에서는 「……自己의 登錄意匠에만 類似하면 新規한 것으로 본다」라고 規定되어 있어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公知意匠에 類似한 것이 없으면 新規性이 認定되어 意匠登錄이 可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新規性의 立場에서 概念을 把握하면前述한 바있는 類似意匠制度가 意匠權의 權利範圍를 確認하는 것이나 아니면 權利의 擴張으로 보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後者의 論理에 接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1)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公知意匠과의 關係

第1說: 類似意匠制度의 基本趣旨는 基本意匠의 權利範圍를 確認하여 之으로서 權利侵害로부터 救濟手段을 지체 없이 行使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基本意匠의 權利範圍에 屬하는 것은 모두가 類似意匠으로 登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說에 의하면 基本意匠出願後는 勿論, 基本意匠出願前의 他人의 登錄意匠, 出願意匠 또는 公知意匠에 類似하드라도 基本意匠에 類似하면 이것을 類似意匠으로 登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說은 「自己의 登錄意匠에만 類似한……」을 「自己의 登錄意匠에 類似한……」으로 解釋하는 結果가 되며 또한 基本意匠의 出願前에 登錄된 他人의 意匠 또는 他人이 公知시킨 意匠은 基本意匠의 權利範圍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意匠權에 관한 紛爭의 소지가 있게 되어 이說은 不合理한 主張이다.

第2說：基本意匠의 權利範圍는 基本意匠出願前의 他人의 出願意匠, 登錄意匠, 또는 公知意匠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나 基本意匠出願後의 他人의 出願意匠 또는 公知意匠等에 의하여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類似意匠登錄은 基本意匠出願前의 他人의 出願意匠, 登錄意匠 또는 公知意匠에 類似한것은 類似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으나, 基本意匠登錄出願後의 他人의 出願意匠 또는 公知意匠에 類似한것에는 구애받지 않고 基本意匠에 類似한것은 類似意匠으로 登錄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第1說보다 合理的일지 모르나 類似意匠은 新規性 및 創作性의 問題에 있어서 基本意匠과의 關係에서 단例外로 하고 其他는一般的인 登錄意匠과 다를바 없으며 그 効力도 獨自의 權利範圍을 갖는것이므로, 이경우는 基本意匠登錄出願後, 類似意匠登錄出願時까지에 發生한 他人의 出願意匠 또는 公知意匠에 類似한것으로 因하여 新規性내지 創作성이 不充分한 意匠이 되므로 類似意匠登錄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萬一 他人이 이미 公知시킨 意匠과 類似한 意匠인데도 불구하고 類似意匠登錄을 하여준다면 結果的으로 他人의 公知意匠도 그 類似意匠의 權利範圍에 들어가

는것으로 一旦은 認識되어 이미 公知意匠을 實施하여 오연者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說도 妥當하지 않다.

第3說：自己의 登錄意匠과 類似한 意匠이 他人의 登錄意匠이나 他人의 出願意匠 또는 他人의 公知意匠과도 類似한 경우에는 어느쪽에 보다 많이 類似한가에 따라서 自己의 登錄意匠에 보다 많이 類似하면 類似意匠으로 登錄하고 그와 反對면 類似意匠登錄을 할 수 없다는 說이다. 이는 어느쪽에 보다 類似한가를 判斷하여 類似意匠登錄을 하여 주는 것이므로 얼핏보면合理的한 것같이 생각되며 또한 意匠審查實務에서도 이런 基準으로 判斷하기가 쉬우나 이는 「…自己의 登錄意匠에만 類似한…」이란 法規定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類似意匠에도 獨自의 權利範圍가 있음을 考慮할때 이때의 類似意匠의 權利範圍은 그 他人의 意匠에까지 重合되는 部分이 發生함으로 이 또한 不合理한 說이다.

第4說：基本意匠登錄出願前은 勿論이고 類似意匠登錄出願前의 他人의 登錄意匠, 他人의 出願意匠 또는 他人의 公知意匠에 類似한 경우에는 類似意匠登錄을 할 수 없고 오로지 自己의 登錄意匠에만 類似한 경우에限하여 類似意匠登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說은 實定法規定에充實하여 또한 基本意匠의 權利範圍를 分明하게 確認하여公開하여 之으로서 權利의 紛爭을 事前에 防止하고 權利侵害에 對하여 지체없이 救濟手段을 講究하는것을 目的으로 한 類似意匠制度의 趣旨에도 合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이 現在의 通說이며 또한 現行 意匠審查基準도 이說에 立却하고 있다.

그러나 이說은 類似意匠制度의 適用을 肆게한다는 非難이 있다. 〈계속〉

## 韓國發明特許協會新刊案內

### 改正工業所有權法解說

—改正版—

特許廳 法務課長 金惠來著

가격 : 3,500원

### 美國工業所有權法

—改正版—

本會調查部 國際課譯

가격 : 6,000원

###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가격 : 3,0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

### 中共工業所有權制度

—國內最初發刊—

本會調查部 譯

가격 : 5,000원